

<모내기> 질의서

I. 진술인 (성완경 교수)에 대하여

1. 진술인의 재판 관여 당시 상황과 감정 경위 등

- 1) 미술평론가로서의 진술인의 경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술인은 1990. 10.16.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여부를 다루었던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에서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 3) 이 그림을 그린 신학철 화백이 <모내기> 사건으로 긴급체포 된 1989년은 문의환 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특히 공안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인원이 급증하던 때였습니까?

2. 신학철의 작품세계와 <모내기>

- 1) 신학철 화백의 작품 세계의 변화와 특징, 그리고 미술평론계에서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2) 이 그림 <모내기>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특히 그 공간(위쪽과 아래쪽)과 상징물들의 의미, 그리고 그 상징물들을 쓸어내는 써레질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3) 신학철 화백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이 1987년인데,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이 그림의 주제 및 표현방법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요? 또한, 당시 문화예술계 및 화단의 평가는 어떠하였나요?

3. 감정 관련

1) <모내기>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감정서를 제출한 홍종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2)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한 근거는 다름아닌 홍종수씨의 감정내용이었는데요. 홍종수는 이 그림에 등장하는 각종 상징물을 남북한에 실제하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실적 표현들이라고 주장하며, 이 그림이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그림 곳곳에 배치된 상징물들을 농민들의 써레질=남한의 농민들이 미·일제국주의자,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쓸어버리고 반외세투쟁을 전개하는 것, 백두산=혁명의 성산, 시골의 초가집=만경대, 평화로운 농민들과 어린이들의 모습=북한 농민과 북한 어린이의 행복한 모습이라는 식으로 해석했는데, 미술평론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3) “남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북한을 미화 시킨다”는 식의 해석 외에도, 홍종수의 감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요.

4.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진술인이 감정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그림을 감정하고, 이후 대법원이 위 홍종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이 그림을 “피지배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재판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II. 참고인 (김정환 시인)에 대하여

1) 참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1989년 경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2) 당시 <모내기> 사건으로 신학철 화백이 체포되었을 때, 문화 · 예술계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또한, 이 사건이 문화 · 예술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가요.

3) 비슷한 시기, 이 그림 외에도 문화 · 예술인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사례가 있었습니까.

4) 당시 신학철 화백처럼 ‘현실참여적 리얼리즘’ 계열의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에 대해 미술계는 어떤 평가를 하며, ‘현실참여’는 어떻게 해석되는가요.

5) 참고인은 본인이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나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아 본 일이 있는가요.

6) 창작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문제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문화 · 예술인들은 이후 창작과정에서 무의적으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모내기> 사건 이후 신학철 화백의 창작 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참고인이 경험한 다른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7) 현재 이 그림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몰수되고 2004. 3. 16. UN 인권이사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작품 내용을 이유로 이를 몰수하고 작가에게 돌려주지도 않는 것에 관하여, 참고인이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8)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작가 ·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서

•
•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질의서

I. 진술인(장상환 교수)에 대하여

1. 사건 경과

- 1) 이 사건은 1994. 7. 8. 김일성 주석사망으로 인한 조문파동과 , 7. 18.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등으로 정국이 한창 소란스런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오.
- 2) 이 사건은 2004. 8. 3. 동아일보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오.
- 3) 진술인은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을 당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나요.
- 4) 검찰의 수사과정, 특히 강제구인에 대해 민교협을 비롯한 7개 단체가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구인 철회 등을 주장하였고, 진술인을 포함한 경상대 교수들은 강제구인에 불응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왔는데, 교수들의 대응과정과 그 대응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 5) 교재집필 교수들은 처음에는 검찰의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으며 강경대응을 하다가 8. 30.에 수사기관의 구인에 응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 6) 검찰은 진술인과 정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집필자들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다른 교수의 투서까지 공개하였다고 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7) 진술인 등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담당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는데, 영장기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진술인 등은 석방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교수직위를 박탈당했다가 다시 복직되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오.

9) 진술인 등은 1994. 11. 30. 기소된 후 6년이 지난 2000. 7. 24.에야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는데, 1심 재판과정과 재판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오.

10)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진술인이 재직 중인 국립 경상대학 당국은 교과과정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를 폐강하기로 결정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와 무죄판결 이후에 대학당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진술인 등의 대응은 또 어떠했는가요

11) 진술인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의 신분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문활동을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의 신분이란 점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곤란은 어떤 것인가요

12) 1심 무죄 판결이후 2심 무죄판결은 2002. 8.,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은 2005. 3. 11.에 나와서 이 사건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총 11년입니다. 지난 11년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2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와 관련하여

1) 진술인 등 경상대 교수들이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교재를 만든 동기는 무엇이고, 출판과정은 어떠했는가요

2) 이 교재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에 대해 물론 법원은 시종일관 무죄선고를 하였으나 검찰은 이 교재가 대학 저학년을 상대로 하는 교양교재란 점에 주목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우려하고 지적한 위험이 저학년 수강생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요

3)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증인신청하여 신문함으로써 제자를 동원해 교수의 죄를 입증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증인으로 나온 학생들은 어떤 진술을 하였는가요

4) 검찰은 이 사건재판에서 문제가 된 교재뿐만 아니라 시험문제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시험문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해주시오.

II. 참고인(최갑수 교수)에 대하여

1.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1) 참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약칭 '민교협')의 사무처장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로 있었지요

2)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민교협을 비롯한 전국의 교수들과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등 전문가들은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안당국에 항의하고, 피고인이 된 교수들의 구명운동에 나섰는데,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3) 참고인의 주장은 결국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학자들이 결기하였다는데, '학문의 자유'도 법의 울타리 내에서만 인정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학문활동은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학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국내외 사례). 학문활동에 대한 법적·정치적 억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가요

5)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본 교재가 아직 균형잡힌 판단을 하기에 아직 미숙한

대학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바, 교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의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6) 물론 이 사건 교재는 무죄판결을 받아 이 질문과는 상관없게 되었지만, 만약 어떤 교수 가 강의실에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주장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는 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어떤 학생이 교수의 강의내용에 대해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아주 설득력있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때 교수 가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으면, 그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고지죄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보안법 규정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7) 실정법의 문제로 돌아와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허위사실 날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학문의 자유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8) 학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재판마다 학문 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은 충돌해 왔으나 아직까지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학문연구·교육의 영역과 사법당국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정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보다 학문의 자유는 더욱 상위의 자유권이므로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자의 입장에서 사법당국의 역할과 학문연구·교육의 영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요

9) 이 사건에 대해 총괄 평가한다면?

사건개요

〈모내기〉 사건

〈모내기〉 사건

○ 1989년 8월 17일, 서울시경 대공과는 1980년대 민족미술계의 대표적 작가이며 민족미술 협의회 전 대표인 신학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¹⁾하였다. 1987년 8월 제작되어 그해 8월 중순경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전시되고, 1988년 10월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된 바 있는 그림 <모내기>가 김일성 생가를 그리고 북한의 폭력 혁명에 동조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²⁾에 따르면 “…북한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의 상단에는 북한에서 소위 혁명의 성산이라 일컬어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노는 장면과 좌측 상단부분에는 북한에서 혁명의 요람이라 일컬어지는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릉도원 같은 시골마을을 그려 넣는 등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고”있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그림 상단부는 북한을 의미하는데 매우 풍요롭게 그려져 있고, 하단은 남한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판자본과 독재권력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러한 <모내기>에 대한 검찰의 이적표현물 기소에 대해 미술계는 “검찰의 편견에 찬 해석, 일종의 공안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³⁾.

1) 신화백은 1989년 11월 15일, 구속된지 3개월 만에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2)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70046호 사건 공소장

3) 특히 미술평론가 성완경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를 통해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렇다해도 이것이 예술의 경우에 적용될 때는 훨씬 섬세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언어는 일상언어와는 달리 매우 주관적이고 복합적 다의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문자적 진술과 등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것을 일상언어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 미술비평가나 미술사가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미술작품의 내용을 두고 미술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인이라 할 수 있는 행정당국이 구체적인 어떤 주장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위험이 따

모내기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었다.

○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 판사는 1992년 11월 12일, 신학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예술작품에 대한 실정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그림의 하반부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하반부의 그림 중에 탱크, 미사일 등 무기를 써래질하는 모양은 비인간적이고 평화와는 상치되는 무기의 배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림의 상반부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무죄로 판결하였다⁴⁾.

○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대법원⁵⁾은 1,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통일 저해 요소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한을 미·일제

른다고 본다. 성완경, <모내기감정서>, 1991.1.

4) 1심 재판부는 “첫째, 그림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이념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위반되는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하여 그림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미술품이 실정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획일적, 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여야 하며, 셋째, 회화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이적성을 띠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각개의 구성 부분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넷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그 제한 법규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방법을 기초로 무죄판결하였다. 서울지법 89고단7174. 한편 1994년 11월 16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서울고법(재판장 김영기 판사)은 역시 무죄판결을 내린다. 서울형사지법 1994.11.16. 선고 93노7620 판결

5)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1998.3.15. 선고, 95도117판결.

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한 것이다.

○ 이 판결에 따라 열린 환송심(1999년 8월 13일)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건홍부장판사)는 신화백에게 대법원 판시대로 <모내기>에 대해 이적표현물로 유죄 판결하였고 (98노2857),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그 해 11월에 신화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형의 선고유예와 그림 몰수 등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99도3839).

○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 및 대법원이 <모내기>를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정하는데 주요증거가 된 감정서를 제출한 홍종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과정에서 홍씨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이 아니라 1980년 5월 광주항쟁 직전에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으로, 체포된 후 전향하여 경찰청 산하의 대공전술연구소에서 일해왔으며 미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변호인의 신문내용⁶⁾을 통해서도 홍씨의 감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추측과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평가의 기초가 되는 ‘감정’으로 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술평론가의 의견보다 아무런 전문지식 없는 북한 대남공작원 출신 증인의 의견을 판결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남겼다.

6) 홍종수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남쪽”에는 모순을 그리고, “북쪽”에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그렸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 “초가집”에 대하여 “화가의 뜻이 무엇인지 감정한 사람으로서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위치는 다르지만 ‘김일성의 생가’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 (초가집을 만경대로 보는 이유는) “위 그림이 남북을 대비해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북한쪽에만 그렇게 그려 놓아서 북한찬양 또는 북한의 만경대를 연상시켰다라고 봤습니다. … 북한에서 온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 “우리사회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남쪽에 있는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행복한 것처럼 한 것이 문제입니다.” …(변호인)“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점이 있는가요.” “북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좋아 할 것입니다.” … “북한이 대남적화를 노리고 있는데 미군의 칠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군이 칠수하면 남한은 적화된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조용환, <변론요지서>, 1999.7.9. 참조.

○ 2000년 5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개인통보 제출

신학철씨(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모내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19조를 위반했다"며 개인통보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한국정부가 모내기 그림을 폐기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0년 5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한국정부에게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 2004년 3월 16일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에 대한 유죄판결은 B규약 19조 위반" 결정(view)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죄판결에 대한 금전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소송비용 보상, 통보자의 작품을 원상 그대로 반환, 장래에 유사한 사건의 발생회피를 권고함. 또한 이사회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90일 이내에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명함⁷⁾.

○ 법무부, HRC 결정에 대한 이행조치로 인권이사회 결정문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2004년 6월 10일 UN 인권이사회에 통보.(국민일보2004/6/12/8쪽 기사참조)

○ 신학철 화백은 유엔인권이사회 결정 이후 2004년 4월, 검찰에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몰수돼 국고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없다"며 열람등사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모내기>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되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다.

○ 이 사건은 변호인의 지적대로, "한 사람의 내면의 예술세계와 작품에 대하여 이런 식의

7) UN Doc CCPR.C.80/D/926/2000 paras.7-10.

비논리적인 획일화를 통해 법적으로 단죄하는 사회가 과연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있는지, 사람의 말과 행동, 작가의 작품 활동의 방향, 필체와 그림의 제작기법 하나하나까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규정하는 전체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제기하였다.

○ 또한 이 사건은 예술작품에 대해 예술적 가치가 아닌, 국가보안법 잣대를 들이대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술·표현·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무한한 상상력과 표현력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실례를 증명해 준 사건이었다⁸⁾.

8)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한 조사결과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좋은 보기이다. 민예총이 2001년 8월, 예술가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현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법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응답자의 75.9%가 국가보안법을 지적했다. 또한 위 설문조사에서 예술가의 35%가 "작품 창작시 자기검열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라고 65.7%가 답변하였다.

사건개요

●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경상대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뒤이은 '조문논쟁'과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빌미로 공안당국이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그에 정부와 여당, 언론이 가세하면서 '매카시' 선풍에 비견될 만한 신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 1994년 7월 18일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14개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그 뒤에는 사로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는 돌출발언을 하였다. 논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었으나, 그럼에도 이 발언은 공안세력의 신공안정국 조성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 일부 언론은 "운동권 학생에게 들었다, 노동신문과 한총련 문건을 비교해보면 알 것, 점조직으로 극비리에 활동하는 요인암살 테러조직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등의 박홍 총장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하면서, 심지어 박총장의 발언을 '진실폭로'로 규정하기도 하였다⁹⁾.
- 또한 수사기관은 박총장의 발언에 부화뇌동하며 수년 묵힌 공안자료들을 우려먹기식으로 연일 발표하였으며, '주사파' 학생들을 엄단한다며 140명을 수배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강경방침을 밝혔고, 연이어 "주사파 조직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급조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안기부 및 검찰 등의 공안기안이 발표한 수사내용 중에 무리한 과대포장에 근거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¹⁰⁾

9) 가령 당시 조선일보는 "박홍 총장의 이번 대정부 경고성 발언은 만사지탄의 경종"(7/22 시론)으로 추켜세우면서, "명백한 친북 주사파와 폭력세력은 '학생' 아닌 '인공 전투원'으로 규정해서 분쇄"(7/20 사설)라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운동권은 지금 자신들이 북한의 지도노선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박 총장을 몰아세우면서 총장해임 운동이다, 고발이다 하며 심지어 그의 신변을 괴롭히기도", "상투적인 전략전술로 지식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박총장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같이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동참을 촉구한다"(7/21 사설)고 주장하였다.

○ 7월 27일 경남경찰청은 진주 우리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한국사회의 이해」 등 13권 90여권의 서적을 압수하고, 서점 대표 정대인씨를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체포하여 책 판매 부수 등을 조사한 후 풀어주었다.

그리고 8월 1일, 박홍 서장대 총장은 동경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인 8월 2일, 대검 공안부(최환 공안부장)가 장상환 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대립을 강조, 계급혁명과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 이에 창원지검이 경상대 장상환 교수 9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교수들은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안당국에 의해 재단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소환에 불응, 농성에 들어갔다.

○ 8월 30일, 집필 교수들은 검찰의 구인에 응하고 나머지 6명은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교수들 가운데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그러나 31일 창원지방법원 최인석 판사는 장상환 교수 등이 “불구속처리 대상인 나머지 5명의 교수들과 신병처리를 달리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데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를 “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이나 간행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며,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10) 민가협,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국가인권위원회 2003인권실태조사보고서, 2004. 48쪽 참조

○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창원지검(담당검사 박만)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장교수 등을 기소하였다.

○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 강석규, 권성우)는 2000년 7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2명에게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여만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와 별도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에 우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학문은 학문내의 자율적인 통제력에 의하여 더 큰 발전과 성숙함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사상, 학문이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¹¹⁾라고 판시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사상, 학문의 자유로운 경쟁과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내의 자율적인 통제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한국사회의 이해」가 비판적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재로 사용돼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 반포하였고, 강의를 하여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또한 2002년 7월 24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수형, 윤장원, 안창환)도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내용이 당시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책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다”¹²⁾고 밝혔다.

11)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강석규, 권성우), 2000.7.24.선고, 94고합502 판결.

12)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2.8.24. 선고, 2000노764 판결.

부록

- 한편 대법원(2부 주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배기원, 유지담, 이강국)은 사건발생 11년 만인 2005년 3월 15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재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거나,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이 없어 이적표현물이라 할 수 없다”며 “특히 이를 집필한 교수들의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교재를 제작한 것은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¹³⁾고 밝혔다.

- 대학 내 강의내용, 교재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공안적 잣대를 들이댄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법무부에 보내는 그림 <모내기> 서면질의(2005.5.3.)

13) 대법원 제2부, 2005.3.11. 선고, 2002도4278 판결.

법무부에 보내는 그림 <모내기> 서면질의(2005.5.3.)

질문의원명	최재천	소속	열린우리당
질문대상자	법무부장관		

1. 안녕하십니까.

최재천 의원실에서는 오는 5월 9일 (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청문회(이하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이미 법조계를 비롯해서 학계, 예술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밝힌 바 있고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해 국회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문제로, 우리 사회와 17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고 최근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조만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시점에서 본 청문회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란 주제 하에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사건과 진주경상대 강의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다루려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청문회는 국가보안법과 예술 및 표현,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인해 사회문화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학문과 예술에서의 창조성이 어떻게 제약받아왔는지를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본 청문회는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회에서의 첫 번째 행사는 의의와 더불어 구체적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접근, 조명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갈등과 대립,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논의의 장이 되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귀 기관에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서'를 보내드리오니 아무쪼록 5월 6일 (금)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사건과 관련한 질문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사건과 관련한 질문서

○ 사건 개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사건'은 화가인 신학철씨가 1987년에 그린 130×160cm 크기의 유화 <모내기> 그림으로 인해 1989. 8.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같은 해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1999. 11. 26.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현재 <모내기> 그림은 검찰에 몰수당하여 17년째 보관되고 있습니다.

2000. 4. 유엔인권규약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통해 신학철씨(대리인 조용환 변호사)가 진정함에 따라 2004. 3. 16.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견해(UN Doc CCPR.C.80/D/926/2000 paras.7-10.)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죄판결에 대한 금전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소송비용 보상, △통보자의 작품을 원상 그대로 반환, △장래에 유사한 사건의 발생회피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90일 이내에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2004. 5.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1990년 이미 한국정부도 가입한 바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채택한 최종견해(이하 최종견해)에 의하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이 규약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든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본 사건에서의 그림 몰수와 신학철씨에 대한 유죄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므로 규약 제19조 제2항 위반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유엔인권이사회는 본 사건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국내법 적용의 결과라 할지라도 대법원의 유죄판결 근거와는 별도로, 한국당국은 특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그림이 규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목적에 미치는 위협의 정확한 성질 및 그림의 몰수와 신학철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최종견해'에서는 규약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당국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국내 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그림의 반환 등 구제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 '최종견해'에 따르면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와 유사한 침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었거나 있습니까.

5. 위 사건 개요에서 언급한 바, 신학철씨의 진정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반환권고 후 신학철씨는 2004. 4. <모내기> 그림에 대해 검찰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므로 열람 자체가 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하고, 그림이 몰수품이므로 자신이 그린 그림이기에 열람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없다"며 열람등사신청 불허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단체 및 인사들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모내기> 그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그림을 돌려줄 근거가 없으며 국가배상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하던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법무부측이 그림을 위탁관리할

수 있느냐고 문의해와 우리가 보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법무부측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문의한 경위와 의도는 무엇이며 국립현대미술관 또는 기타 기관에 위탁관리 할 의사가 있습니까.

8. 유엔인권이사회는 90일 이내에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4. 5.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9. 법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모내기>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기 위한 전향적인 검토 의사와 계획이 있습니까.

<끝>

<모내기>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견해

<모내기>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견해

UNITED
NATIONS

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배포 제한*

CCPR/C/80/D/926/2000
2004년 3월 19일

원문: 영어

유엔인권이사회
제80차 회기
2004년 3월 15일 - 4월 2일

통보번호 926/2000 : 대한민국 2004년 3월 19일
CCPR/C/80/D/926/2000

진정사건 2000제926호
진 정 인 신 학 철 (대리인 조 용 환)
피 해 자 진정인
당 사 국 대한민국
진정일자 2000. 4. 25.(최초제기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28조에 의거해 설립된 인권이 사회(이하 이사회라 함)는 2004. 3. 16. 회의에서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해 신학철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진정인과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거한 견해

1.1 진정인 신학철은 1943. 12. 12 생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규약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대리를 받고 있다.

1.2 2000. 5. 8. 인권이사회는 새로운 진정사건에 대해 이사회 절차규정 제86조에 의거해 당시국에 대하여, 본 사건의 심리가 계속 중인 동안은 진정인이 그 제작으로 인해 기소된 이 사건 그림을 파기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진정인의 주장사실

2.1 직업화가인 진정인은 1986. 7.부터 1987. 8. 10.까지 가로130cm, 세로160cm 크기의 캔버스에 유희를 그렸다. '모내기'라는 제목의 위 그림은 대법원 판결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그림의 상단 우측에 백두산을, 하단에 파도가 이는 남해 바다를 그리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도를 묘사하고 있고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광경을 그리고 있는 바, 그림 하반부는 모내기를 하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래질을 하면서 소위 미·일 제국주의 등 외세를 상징하는 이.티(E.T), 람보, 양담배, 코카콜라, 매트헌터, 일본 사무라이, 일본 기생,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 나카소네 일본수상, 군사파쇼 정권을 상징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 미군을 상징하는 탱크, 핵무기 등은 물론 지주 및 매판 자본주의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황소가 짓밟으면서 남해 바다 속으로 쓸어버리고 삽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그림 상반부는 상단에 잎이 무성한 나무숲에 천도복승아가 그려져 있고 그림 좌측상단에 두 마리 비둘기가 다정하게 깃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나무숲 우측 아래에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바로 밑 좌측 부분에는 꽃이 만발한 곳에 초가집과 호수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놀고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포충망을 들고 행복하게 뛰어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진정인은 당시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널리 알려졌다고 진술한다.

2.2 1989. 8. 17. 진정인은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림은

압수되었고, 진정인은 검찰의 부주의한 관리로 그림의 가치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1989. 9. 29. 진정인은 그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92. 11. 12.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는 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4. 11. 16. 서울지법 형사5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태롭게 할 정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1999. 3. 13. 대법원은, 원심이 그림을 이적표현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문제의 표현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사건은 서울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되었다.

2.3 환송 후 원심에서, 진정인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제7조의 광범위한 해석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확인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 4. 29. 헌법재판소는 같은 문제에 대한 제3자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미 문제의 조문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조문의 적용범위의 판단은 대법원의 해석에 맡긴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서울지법은 진정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2.4 1999. 8. 13. 진정인은 유죄판결의 선고유예 및 그림의 몰수선고를 받았다. 1999. 11. 26.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단순히 대법원의 환송 전 원심 견해의 배척이라는 결론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하여 진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절차의 종결로, 그림은 압수에 이어 파기될 상태에 있었다.

진정인의 주장

3.1 진정인은 유죄판결 및 그림을 잘못 다루어서 입은 손해는 규약 제19조 제2항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그는 그림이 어린 시절 자신의 전원생활 경험에 기반해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주화의 꿈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사건 그림이 부패한 남쪽 군사정권에 대한 반대, 평화로운 전통적 농경사회인 북 체제로의 구조적 변화의 소망과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선동을 나타낸다는 검사의 논고가 논리적인 이해력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자신이 기소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소리'를 제한하는 것을 직접 목적

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논조로 규약 제40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최초 및 2차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의견, 선택의정서에 따른 진정사건에 대한 이사회의 견해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3.3 진정인은 검사가 그의 기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그 증거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전문성 있는 증인을 불렀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증인은 이 사건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그림은 대한민국의 미·일파의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농부들에 의한 “계급 투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위 증인은, 그림에 나타난 산이 북한에 의한 혁명을, 초가지붕은 북한의 전 지도자 김일성의 생가를 각 상징한다고 한다. 따라서 위 증인에 의하면 진정인은 대한민국의 전복 및 북한의 사상에 따라 사는 “행복한 삶”으로의 대체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3.4 대법원은, 이 사건 그림에 대해 진정인의 말처럼 “통일에 대한 열망 속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개인적인 관념에 따른 상상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한 하급심의 판단과 위 증인의 증언에 대한 하급심의 평가를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고, 위 증인의 견해를 증거로 채택했다. 환송심에서 같은 증인이 다시 증언을 했다. 그는 이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북한에서의 행복한 삶을 그리고 있으므로 북한 사람들이 이를 보면 기뻐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그림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신문에서 위 증인은 전직 북한 스파이이자 전직 미술교사로서 미술에 대한 그 이상의 아무런 전문식견이 없고, 경찰청의 대공전략연구기관에 고용되어 국가안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도와주는 임무를 띤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다.

3.5 진정인에 따르면, 환송 후 원심에서 그의 변호사는 1994년 진정인의 1심 재판 당시 이 사건 그림의 복사본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중예술 15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을 때 그 미술기법이 궁정적으로 논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변호인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미술평론가를 전문가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는 검사가 신청한 위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덧붙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좁게 해석할 것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에 비판적인 인권이사회의 견해들(Views)과 최종의견들(Concluding Observations), 특별보고관의 권고들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의 유죄는 국가보안법 하에서 필요적이며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3.6 진정인은 대법원의 유죄 선고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규약 제19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 목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그림에 대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밝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대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진정인의 북한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연관을 제시하지 않고, 그림을 보는 경우 따르는 효과에 대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3.7 구제조치로서, 진정인은 (국가에 대하여) ① 그의 유죄판결과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그림의 피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선언 ② 그림의 현상 그대로의 무조건 즉각적인 반환 ③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혹은 적용유보를 통해 당사국이 앞으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 ④ 관할 법원의 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⑤ 충분한 보상 제공 ⑥ 관보에 인권이사회의 견해 게재 및 사법부 공람을 위한 대법원에의 당 견해 송부를 구한다.

3.8 진정인은 본 사안이 조사나 해결을 위해 다른 국제 절차에 제출된 바 없다고 진술한다.

심사허용성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4.1 2001. 12. 21. 구두 통고로 당사국은 진정이 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사허용성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진정인 사건의 사법 절차가 규약에 부합되므로 본 사건은 심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2 본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표현의 자유는 표현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받는 것이고, 규약 제19조 자체에서 권리의 일정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은 적법하게 압수되었으므로 재심이나 보상의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인권이사회 견해에 따른 재심은 국내법에서 가능하지 않고 그러한 법 개정도 현재 실행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침해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본안에서 고려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유보나 폐지를 약속할 수 없다.

진정인의 진술

5.1 진정인은 2003. 8. 3. 당사국이 규약 제19조와 관련 그의 유죄를 정당화할 실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당사국 주장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논점과 이사회의 심리

심사요건의 판단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인권이사회는 우선 절차규정 제87조에 따라 진정이 선택의정서 하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6.2 이사회는 동 사안이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의 목적으로 다른 국제적 조사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적 구제수단의 완료에 대해 이사회는, 진정인이 거치지 않았거나 더 빨라야 하는 국내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당사국이 주장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당사국이 심사요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절차가 규약에 부합한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이에 대해 본안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본안 판단

7.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거,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입각하여 본 건 진정을 검토하였다.

7.2 이사회는 진정인의 그림이 규약 제19조 제2항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이사회는 이 조항이 특히 예술의 형태로 전달되는 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그림의 몰수와 유죄의 선고를 통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국내법 적용의 결과라 해도 이사회는 당사국은 본 조치의 필요성을 규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목적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제한은 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거해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나 신용, 국가안보, 공공질서의 존중, 공중보건, 도덕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

7.3 이사회는 당사국의 의견개진은 당사국의 조치가 이 목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음을 주목한다. 그 목적을 위한 필요성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

다. 당사국의 대법원은 국가안보를 피고인의 그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근거로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국은 특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그림이 위에 열거된 목적에 미치는 위협의 정확한 성질 및 그림의 몰수와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화 근거 없이는 규약 제19조 제2항 위반이 될 것이다. 본 사건에서 그림의 몰수와 진정인에 대한 유죄 조치가 위에 열거된 조치를 위해 왜 필수적인가에 대한 개별적인 정당화 없이는 이사회는 위 조치들은 진정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본다.

8. 인권이사회는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본건의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본다.

9. 규약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 판결의 무효화, 법정 비용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당사국은 진정인의 그림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림을 원상복구하여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며 진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이사회에 조약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인정하였고, B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안에 있거나 재판권이 미치는 모든 개인에게 규약에 인정된 권리들을 보장할 의무를 띠게 되었음을 명심하고,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본 견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최종 견해를 공표하기 바란다.

* 번역 : 법무부

부록

학문 예술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표적 적용 사례 (1980년 이후)

학문 예술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표적 적용 사례 (1980년 이후)

사건발생일	사건 내용
1981.9.12	박영창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의 일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했다고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
1986.10.17	대정부 질의시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적용구속된 유성환 의원 사건
1986.11.22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나는 공산당이다 잡아넣어라"고 발언해 구속
1986.11.29	술에 취해 다방 안에서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해 구속
1986.5.	「서노련신문」의 네 칸 만화 <깡순이>의 작가 이은홍씨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으로 구속
1986.5.	술 먹고 노상에 누워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3차례, 김정일 만세 2차례 외 침. 불구속입건
1987.11.	북한방문기 <분단을 뛰어넘어> 책자의 일부를 대자보에 게시했다고 부산대학생 구속
1987.11.11	제주 4.3항쟁을 다룬 시 <한라산>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며 시인이 산하 구속
1987.12	KAL기 폭파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대자보 게재했다고 서울대 박창용 등 대학생 다수 구속
1988.12	학보에 루이제린저의 방북기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에 가다> 서평을 쓴 부산여대생 안상연 구속
1988.6.14	서관모 교수의 <중간 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위치> 논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소환장 발부
1989.12.1	일제시대 만주지역 항일운동사 다룬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된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1989.4.12	방북취재 계획이 탈출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1.6.28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하여 연구원 4명 구속
1989.5.	주체사상 관련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민대, 세종대, 전북대 교지등에 국가보안법 적용, 편집장 등 구속	1993.12.7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의 입장을 실었다고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89.7.12	발표되기전에 집필중이던 공동창작 <어머니의 길>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문학평론가 백진기등 6명 구속	1994.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김일성 신년사>를 천리안의 회망터 게시판에 올린 이창렬씨 구속
1989.7.15	황석영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 게재했다고 '창작과 비평사' 이시영 주간 구속	1994.2.21	노래패 <희망새>의 노래극 대본 <아침은 빛나라>가 이적표현물 해당한다며 가수 등 6명 구속
1989.7.2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불고지죄로 구속영장 청구	1994.3.9	현대철학동호회 게시판에 토론을 돋고자 올린 글을 이적목적이 있다고 구속 한 통신인 김영선 사건
1989.7.31	평양축전에 보낸 결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관련으로 홍성담씨 등 다수 화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4.3.15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공산당선언> 올린 네티즌 진상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법원에서 무죄판결)
1989.7.4	신학철 그림 <모내기>로 부채 제작했다고 이상욱씨 구속(무죄판결)	1994.3.19.	<강의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표현물 펴냈다고 일빛출판사 대표 구속
1989.8.17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1994.3.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이적표현물 펴냈다고 힘출판사 대표 구속
1989.9.	시집 「지리산」 이 빨치산을 미화했다고 저자 이기형과 출판인 정동익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4.4.20.	북한소설 <용해공들> 펴냈다고 도서출판 <일터> 대표 등 구속
1990.1.17.	'사회구성체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주창한 이진경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4.4.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이 이승만 정부를 친미괴뢰로, 여순사건을 미화했다고 작가를 불구속입건
1990.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 만든 작곡가 박종화에게 북한고무찬양적용 구속	1994.6.10.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이적표현물 출판혐의로 백산서당 대표 구속
1990.10.10.	고려대 연세대에서 북한영화 <소금>, <탈출기> 상영시도했다고 총학생회장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전영장 발부	1994.7.18	김일성 주석 사망 조의 표시 현수막, 북한을 동조한 것이라며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등 구속
1990.12.7	몽고 취재중 북한대사 인터뷰 한 KBS PD 2명 국가보안법 입건	1994.7.20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입장 담은 내용을 평불협 회보 <하나로>에 실은 것이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며 범타스님 구속
1990.2.21	한국현대사를 담은 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 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시인 오봉옥과 송기원 실천문학 주간 구속	1994.7.27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가 이적표현물이라며 2명의 혼직 교수 기소
1990.7.12.	제주 4·3 사건 자료집 만든 '아라리연구원'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구속기소	1995.3.12	비전향장기수 장례의식 문제삼아 장례위원장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

1995.3.23	<빨치산 역사기행> 자료집 만든 방송대 강사 김무용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7.12.28	신문, 잡지 등에 실린 다양한 정보를 모아 펴낸 정보잡지 <미래통신>이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며 백성기씨 등 4명 구속
1996.10.1	경인총련 노래패 <천리마>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노래패 단원 10명 구속 (법원에서 무죄판결)	1998.2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했다고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씨 등 구속기소
1996.10.16	무장공비 관련 독자 의견 학보에 실은 동국대 학보 편집장 국보법 위반 구속	1998.4.1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 비디오 테이프 소지했다고 독일유학생 박종대씨 구속기소
1996.10.31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이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며 윤석진씨 구속	1998.4.13	대학 사학과 전공교재로 이용된 책의 일부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하영준씨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적용 구속
1996.2.3	노래책 <희망의 노래> 만들었다고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 및 출판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8.11.25.	초판 발행이후 2년여 지난 레닌 저서 등 번역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하여 양효식 풀무질 출판사 전편집장 구속
1996.5.29	나라사랑청년회 기관지 <장산곶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국가보안법 적용	1998.11.25.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소장 도서 등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책갈피 출판사
1996.6.17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고 이철규 씨 추모 행사 중 당시 교지 내용 전시했다고 편집장 등 구속	1998.4.29.	출소장기수들의 증언록 <끝나지 않은 여정>, 북한여성의 생활상 담은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등을 펴낸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1996.9.26	PC통신에 게시된 무장공비 관련 글 전재했다고 상지대 학보사 기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0.10.24	한총련 출범식 등 동영상을 제작, 게시한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여창 씨 등 이적표현물 제작죄 등으로 구속기소
1997.2.23	북한학생의 편지 담은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생 6명 구속	2000.11.8.	6·15 이후 <김정일의 통일전략> 펴낸 살림터 출판사 송영현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7.4.15.	<녹슬은 해방구>, <국가와혁명>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그날이 오면' 등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대표 3인 구속	2001.10.23	재일교포에게 '훈글' 내장된 컴팩트 디스켓 보낸 잡지사 기자에게 편의제공죄 적용
1997.10.27	서청협 기관지 「서울청년」 지에 미군철수 주장 등을 실었다고 서청협 의장 전상봉씨 구속	2001.10.23	원고청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회합·통신죄 적용하여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등 3명 구속
1997.10.29.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논장 등 사회과학서점 대표 4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2001.11.	빨치산 추모 비문이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며 기세문씨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
1997.11.25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 집필한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직원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기소	2001.11.15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예정작 <탈출기>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대검의 입장에 따라 제한상영
1997.11.26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강의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에 이적표현물 적용하여 구속기소		

- 2001.2.20 2001년도 '노컷전'에 출품예정이던 안성금 화백의 <아! 한반도>가 국가보안법 위반된다고 하여 제한 전시
- 2001.5. 학교 대동제 기간에 한반도, 인공기, 태극기를 함께 내건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구속
- 2001.8.20. 작곡가 박종화의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가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며 작곡가 구속
- 2001.8.21 방북시 '만경대발언'으로 구속했다가 학회논문 <한국전쟁과 민족통일>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구속한 강정구 교수 사건
2002. 9 군부대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현역군인 사건
- 2002.11.1 6.15정상회담 축하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린 현수막에 동조죄 적용하여 흥의대생 구속
- 2002.3.19 사이버에서 대화내용과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글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며 네티즌 이재윤씨 구속
- 2002.5.3 수배자 학생 불잡기 위해 인터넷 까페 내사하던 경찰, 까페 운영자를 다른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복사하여 게시판에 올렸다고 구속
- 2002.5.7 인터넷의 까페에 올린 조선일보 비판글, 최후진술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성공회대생 전지윤 구속
- 2002.7.25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김강필 씨 북한을 찬양고무 했다며 구속, 실형선고